

‘성희롱’변호사 징계

면접 여대생에 수치심...3백만원 과태료

서울대 여조교를 성희롱한 '교수'에게 3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면접시험을 보러 온 여대생을 성희롱한 '변호사'에게도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9일 직원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여대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 신청된 배아무개(41·사시 20회) 변호사에게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배

변호사가 사무직원 모집에 응모하러 사무실로 찾아온 최아무개(22·0여대 법대 졸)씨 등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에 관련된 적나라하고도 저속한 표현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배 변호사가 성적 농담을 했을 뿐 특별한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 등의 중징계는 피하고 과태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